

『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12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12월 23일

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○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[별표1]의 “부설주차장 설치기준”에 의거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의 형평성에 맞게 구미시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 [별표2] “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”을 현실에 맞게 『시설면적 150㎡당 1대를 120㎡당 1대로 하되 다만,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.7대를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 한다.』로 강화하는 내용임

라. 참고사항

○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[별표1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는 주택가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서,
-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주택에 비하여 주차 수요가 많으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의 150㎡당 1대를 **개정안의 120㎡당 1대**와 **당시 조항의 조건대로**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